

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연번	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
1	2589	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2	2586	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	원안가결
3	2587	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가결
4	2588	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. 9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제안이유 :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 조정 현황화 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 및 별표3 관련)
 - 총 계 : 685명 $\Rightarrow$ 685명 (-)
 - 일반직 : 649명 $\Rightarrow$ 649명 (-)
 - 3 급 : 0명 $\Rightarrow$ 1명 (본청 +1)
 - 4 급 : 4명 $\Rightarrow$ 3명 (본청 $\triangle$ 1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. 7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제안이유 :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
 - 16개부서 소관 / 20개 자치법규

-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(위원 해촉사유 등)
 - (현행) 심신장애 등 → (개정) 부득이한 사유 등
 -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해 위원 해임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. 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- 제안이유 :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.
- 주요내용 : 「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 폐지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. 7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- 제안이유 :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보장하고,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하기 위함.
- 주요내용 :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·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 조문 신설(안제24조의2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